
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전라북도 고시 제2002-208호(2002.7.6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2일
전 주 시 장

I. 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“변경없음”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7	전주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8일원	2,535,846.6	-	2,535,846.6	2002.7.6 전라북도 고시 제2002-208호	

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“변경없음”

- 1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“변경없음”
- 2)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“변경없음”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“변경없음”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“변경”

1) 전용주거용지 : “변경없음”

2) 일반주거용지 : “변경”

도면번호	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	비고
				위치		면적(㎡)		
기정	변경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B-1	B-1	145	4,384.2	-01	-01	2,189.6	2,189.6	주차장 용지
	B-3			-02	-02	2,194.6	1,103.5	
	B-1				-03		275.6	
					-04		269.9	
					-05		269.7	
					-06		275.9	

※ 변경사유 : 대규모 획지를 분할, 적정규모의 주차장용지를 조성하여 홍산교회와 인접 거주민의 주차공간 제공 및 주변 불법 주·정차 방지효과 확보하고 잔여 필지는 단독주택용지 조성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

3) 공동주택용지 : “변경없음”

4) 중심상업·업무 및 준주거 용지 : “변경없음”

5) 공공시설용지 : “변경없음”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“변경”

1) 전용주거용지 : “변경없음”

2) 일반주거용지 : “변경”

■ 단독주택용지 : “변경”

도면 번호	위치		구분		계획내용
	기정	변경			
B-1	BL 8,9,11~14	BL 8,9,11~14	용도	지정 용도	◦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◦다세대주택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기존 존치(종교)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·재생에너지설비(미관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설 제외)
	BL 16~19	BL 16~19		불허 용도	◦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◦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
	BL 21~51	BL 21~51	건폐율		60% 이하
	BL 53~64	BL 53~64			
	BL 65	BL 65	용적률		180% 이하
	(1~9)	(1~9)			
	BL 68	BL 68	높이		4층 이하
	(1~9,12~20)	(1~9,12~20)			
	BL 69~76	BL 69~76	배치		시행지침 25조
	BL 80	BL 80			
	(1~6)	(1~6)	형태		시행지침 26조, 27조, 28조, 29조, 31조
	BL 81~97, 99~101	BL 81~97, 99~101			
	BL 103~119	BL 103~119	색채		시행지침 26조
	BL 120	BL 120			
	(1~4)	(1~4)	건축선		-
	BL 122~125	BL 122~125			
	BL 127	BL 127			
	(1~12)	(1~12)			
	BL 128~135	BL 128~135			
	BL 137~151	BL 137~144 BL 145 (1, 3~6) BL 146~151			
	BL 154	BL 154			
	(1~6)	(1~6)			
	BL 155~160	BL 155~160			
	BL 162~163	BL 162~163			
	BL 164	BL 164			
	(3~8)	(3~8)			
	BL 166~190	BL 166~190			
	BL 195~196	BL 195~196			

■ 근린생활시설 용지 : “변경없음”

■ 주차장용지 : “신설”

도면 번호	위치		구분		계획내용
	기정	변경			
B-3	-	BL 145(2)	용도	지정 용도	◦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제외) ◦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에 한함
				불허 용도	◦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폐율		20% 이하
			용적률		20% 이하
			높이		1층 이하
			배치		시행지침 85조, 86조, 88조, 89조
			형태		시행지침 85조, 86조, 88조, 89조
			색채		시행지침 87조
			건축선		-
			기타		시행지침 34조

※ 변경사유 : 일반주거용지 내 주차장용지 확보

3) 공동주택용지 : “변경없음”

4) 중심상업·업무 및 준주거 용지 : “변경없음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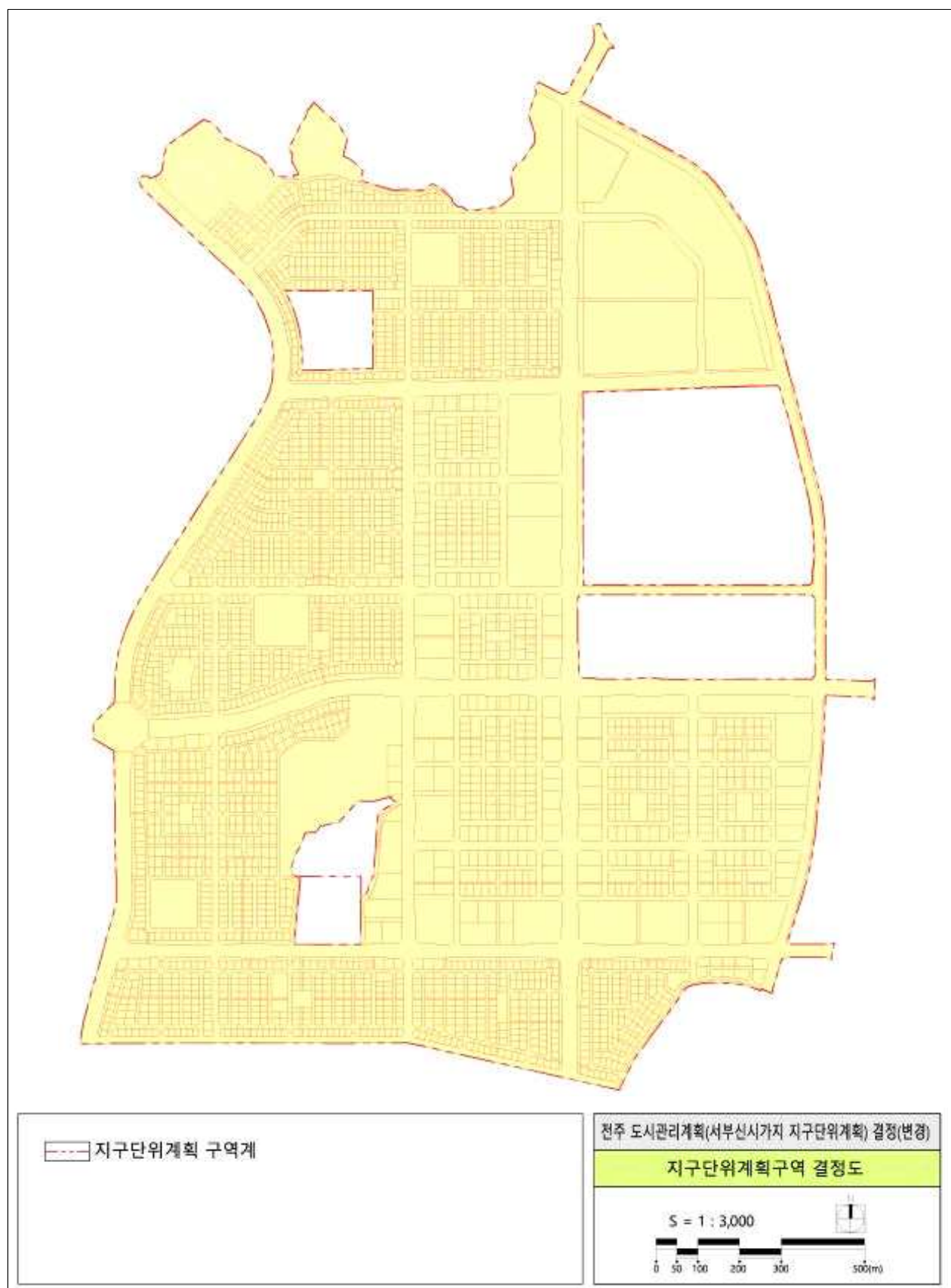
5) 공공시설용지 : “변경없음”
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 : “변경없음”



[illegible]

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: “변경없음”



4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 : “변경”



Ⅲ.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

①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

제3장. 일반주거용지

☑ 교통처리에 관한사항 : “변경”

제34조 (주차장의 설치) “변경”

<규제사항>

- ① 일반주거용지내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주차장용지(B-3)의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, 석재블럭, 점토블럭 등 친환경(투수성)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해야 한다.



Ⅳ. 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-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V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(☎063-281-24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